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680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15. 선고 2020가소3869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을 범죄사실로 삼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 ‘피고가 원고의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망 또는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 판사 이효진